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, 관세청, 산림청,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하부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하부조직의 평가기간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　　의 :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법령별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27. ~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2(제27조의2)를 삭제한다.

별표 2의2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 2)부터 4)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.

제4조(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중 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”을 “관세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.

제5조(「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

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.

제6조(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 4와 같이 한다.

제7조(「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1)을 삭제한다.

제8조(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5를 별지 5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[별표 5]

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54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물관리정책실 1개 과	4명

[별지 2]

[별표 4]

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(제30조의2제1항 관련)

1. 평가대상 조직

조직	정원
1) 인천공항세관 1개 과	12명
2) 인천공항세관 1개 과	10명

2. 평가대상 정원

업무	정원
1) 특송물품 현장검사(세관관서)	5명
2) 특송물품 현장검사(세관관서)	11명
3) 특송물품 현장검사(세관관서)	13명
4) 특송물품 현장검사(세관관서)	18명

[별지 3]

[별표 3의2]

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34조의2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산림보호국 1개 정책관등	0명

[별지 4]

[별표 4]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5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조사관리관	1명

[별지 5]

[별표 2의5]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2조의2 관련)

1. 국무조정실

조직	정원	평가기간
1) 청년정책조정실	1명 (고위공무원단 1명)	2025년 12월 31일까지
2) 청년정책협력관	1명 (고위공무원단 1명)	2025년 12월 31일까지
3) 청년정책조정실 1개 과	3명 (4급 1명, 5급 2명)	2025년 12월 31일까지
4) 경제조정실 1개 과	4명 (4급 1명, 5급 3명)	2026년 9월 30일까지

2. 국무조정실 소속기관

조직	정원	평가기간
1)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	1명 (고위공무원단 1명)	2026년 9월 30일까지
2)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	5명 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3명)	2026년 9월 30일까지
3)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	3명 (4급 1명, 5급 2명)	2026년 9월 30일까지
4)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	4명 (4급 1명, 5급 2명, 6급 1명)	2026년 9월 30일까지
5) 조세심판원 1개 과	1명 (4급 1명)	2027년 12월 31일까지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	<삭 제>
제27조의2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	<삭 제>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② (생 략)	제30조의2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 ① ---------- 관세청 소속기관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502